

貨換信用狀去來에서의 書類受理拒絶權의 喪失事由

徐 正 斗*

-
- I. 問題의 提起
 - II. 書類審査義務와 受理拒絶權의 發生
 - 1. 書類審査義務의 意義
 - 2. 瑕疵擔保責任의 缺如
 - III. 瑕疵書類의 受理拒絶權의 喪失事由
 - 1. 書類만의 審査義務의 違反
 - 2. 受理拒絶 通告期間의 經過
 - 3. 瑕疵書類 處理節次의 違反
 - IV. 最近 國內法院의 關聯判例 評釋
 - V. 結 言 - 實務上의 留意點
-

I. 問題의 提起

무역현장에서는 貨換信用狀에 의한 지급방식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수출대금의 支給拒絶(unpaid) 또는 수입사기에 의한 不當支給(improperly paid)의 사태도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업계에서 貨換信用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신용장에 관한 國際的인 慣習과 法規에 따른 세심한 검토없이 단순한 업무처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실무상의 허점은 외국의 악덕상인들에게 逆利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소위 “國防部 武器導入詐欺事件”(서울민지판 1996.7.26, 94가합34802)의 경우도 프랑스의 무기중개상에게 수입사기를 당하

* 全北産業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고 대금을 부당지급한 후 국내의 신용장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에서 瑕疵書類에 대한 受理拒絶權의 喪失與否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은 서류상에 비록 하자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설의뢰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受理拒絶의 通告를 행하지 아니하면,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상실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信用狀 統一規則(UCP) 제 14 조 e 항에도 “개설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 경우에는, 書類가 신용장의 諸條件과 一致하지 아니하다는 主張을 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라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곧 신용장 개설은행측과 수익자 사이에서의 瑕疵書類에 대한 受理拒絶權의 喪失問題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¹⁾

실무적으로 보면 瑕疵書類에 대한 受理拒絶權의 喪失은 서류의 審査段階에서 注意義務를 懈怠하거나 서류의 瑕疵事項을 발견하고도 通告節次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판례와 통설, 신용장 통일규칙의 관련조항과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화환신용장거래에서 瑕疵書類에 대한 受理拒絶權이 喪失되는 현실적인 事由들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최근 國內法院의 판례를 評釋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업계의 새로운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II. 書類審査義務와 受理拒絶權의 發生

1. 書類審査義務의 意義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書類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문면상 一致性의 여부를 審査하여야 하며, 이를 은행의 “書類審査義務”라고 한다.²⁾ 은행은 서류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한 相當한 注意를 다하지 아니하는 한, 書類에 대한 受理拒絶權을 상실한다.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한 은행은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왜냐하면 신용장 개설약정과 신용장 개설신청서도 信用狀 統一規則을 준용규정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한국의환은행, 수입거래약정서 제 15 조).

2) E.P. Elling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Singapore, 1970, pp. 161-163.

(1) 一致性에 관한 注意義務

은행은 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하여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嚴格히 一致한 書類만을 수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一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受理를 거절할 수 있다(신용장 통일규칙 제 14 조 b 항).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수입상의 특별대리인이기 때문에,³⁾ 문면상 嚴格히 一致한 서류만으로 거래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다.

일찍이 영국의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 사건⁴⁾에서, 원고은행은 피고 수입상의 지시에 따라 Batavia (Jakarta)의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런데 신용장 개설의뢰서에는 “數人の 전문가”(experts)가 서명한 검사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신용장은 電信符號의 착오로 “1人の 전문가”(expert)라고 통지되었으며, 이로써 수익자는 1人の 전문가를 속여 가짜로 선적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Sumner 경은 원고은행의 不注意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인수은행은 인수하도록 수권된 條件이 첨부서류에 관하여 嚴格히 遵守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통념이자 상식이다. 서류에 있어서 거의 同一하거나 또는 正當하여야 함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 … 은행이 특정된 條件으로부터 이탈하는 한, 그는 자신의 危險負擔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一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受理할 의무가 없다. 예컨대 *English, Scottish and Australian Bank, Ltd. v. Bank of South Africa* 사건⁵⁾에서 Bailhache 판사는 “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이 개설된 신용장과 엄격하게 一致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신용장에 따라 그에게 제시된 환어음을 支給할 의무가 없다거나 또는 실제로 그러한 權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의 *J.H. Rayner and Co., Ltd. v. Hambros Bank, Ltd.* 사건⁶⁾에서도 Mackinnon 판사는 위의 *The Dawson* 사건을 인용하면서 “은행은 제시된 書類, 특히 船貨證券이 그가 개설한 신용장의 조건과 正確하게 一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람출급 환어음의 支給을

3) Clive 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9th ed., London, 1990, p. 406.

4) (1927) 27 Ll. L. Rep. 49 (H.L.) at p. 52; A.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London, 1965, p. 79.

5) (1922) 13 Ll. L. Rep. 21 at p. 24.

6) (1942) 74 Ll. L. Rep. 10 (C.A.).

拒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의 *Lamborn v. Lake Shore Banking & Trust Co.* 사건⁷⁾에서도, 피고는 행은 550 포대의 “Java white granulated sugar”에 대한 船貨證券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수익자는 550 포대의 “Java white sugar”라고만 명시한 船貨證券을 제시하고, 은행은 서류의 瑕疵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절하였다. 이에 Smith 판사는 “선화증권상에 ‘Java white’라고 설탕을 기술한 것은 신용장에서 ‘Java white granulated sugar’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수권한 것과 一致하지 아니한다. … 신용장에 대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수권된 당사자는 신용장을 유효하게 하는 제조건을 嚴格히 遵守하여야 하며, 만약 그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는 은행에 대하여 여하한 訴訟의 이유도 갖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Moss v. Old Colony Trust Co.* 사건⁸⁾에서 Rugg 판사는 “은행이 指示된 者와 거래함에 있어 信用狀條件을 嚴格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은 통상적으로 은행에 대한 모든 義務를 면하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一致性에 관한 緩和規則

신용장거래에서 一致性의 審査原則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서류의 不一致가 경미하거나 附隨의인 사항이어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이미 거래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도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서류가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偽造 또는 虛偽로 밝혀졌을 경우 이를 수리한 은행은 詐欺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개정된 信用狀 統一規則 제 13조 a 항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相當한 注意를 기울여 審査함으로써 그 서류가 文面上 신용장의 제조건과 一致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정된 서류의 文面上 신용장의 제조건과의 一致性은 본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의인 銀行標準慣習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함께, 제 37조 c 항에는 “商業送狀上の 物品明細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서류상에는 물품은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一般用語로

7) 188 N.Y.S. 162 at p. 164 (1921) ; Davis, *op. cit.*, pp. 177~178.

8) 140 N.E. 803 at p. 808 (1923) ; Ellinger, *op. cit.*, p. 280.

표기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실무상으로 서류와 신용장조건이 一語一句까지 嚴格히 一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一致性的 여부를 심사할 때에 은행은 본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銀行裁量權의 폭을 넓혀 놓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류심사에 있어서 銀行裁量權의 한계에 관하여는 각국의 해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영국에서는 서류심사에 관한 소위 “緩和規則”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찍이 *The Dawson* 사건⁹⁾에서 Sumner 경은 “서류가 거의 同一하고 또한 正當하여야 함에는 결코 여지가 없다.”라는 대원칙을 확립하였다. 또 Gutteridge & Megrah는 “은행은 그 지시사항을 嚴格히 遵守하여야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역설하였다.¹⁰⁾ 다만 *Midland Bank Ltd. v. Seymour* 사건¹¹⁾에서 Devlin 판사는 “명세는 대체로 서류의 전체에 걸쳐 삽입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따라서 船貨證券上の 명세가 선화증권상의 約款과 不一致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목적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명세는 서류 중의 하나인 送狀에 충분히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예도 있다.

둘째, 미국에서는 서류의 嚴格一致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¹²⁾ 영국의 해석과는 달리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가 신용장과 일치하는 한, 선화증권과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가 一般的인 用語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사건¹³⁾에서 商業送狀上の 物品明細는 신용장과 일치하게 “Alicante Bouchez grapes”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船貨證券上에는 단순히

9)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 (1927) 27 Ll. L. Rep. 49 (H.L.), “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

10) H.C. Gutteridge &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London, 1984, pp. 58 and 118; *Hansson v. Hamel & Horley* (1922) 2 A.C. 36 at p. 46.

11) (1955) 2 Lloyd's Rep. 147 at p. 152.

12) “상사계약에 있어서 嚴格履行의 原則에는 결코 여지가 없다.”(*Mitsubisi Goshi Kaisha v. J. Aron & Co.* 16 F. 2d 185 at p. 186 (1926))거나, 또는 “銀行은 [고객의] 권한에 의하여 부여된 權利를 享유하면서 그 부과된 制限條件도 따라야 한다.”(*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239 N.Y. 234 (1924))라는 판시가 그것이다.

13) 239 N.Y. 234 (1924); Boris Kozolchyk,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New York, 1976, p. 271.

“grapes”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뉴욕 항소법원은 이러한 서류를 정당한 제시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서 Kozolchik 는 현실적으로 서류에 대한 嚴格一致性의 緩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i) 計數的인 過不足이 허용되는 경우, (ii) 은행이 각 거래조건의 의미를 精査할 필요가 없는 경우,¹⁴⁾ (iii) 고객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은행의 재량권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미 權利拋棄를 한 경우, (iv) 은행관습이나 구속력 있는 外國法에 따라 해당은행이 일정한 요건하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경우, (v) 고객의 積極行爲로 수익자의 엄격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으로 정리하였다.¹⁵⁾ 미국의 이러한 緩和規則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信用狀 統一規則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셋째, 대륙국가의 일반적인 의견은 書類一致性에 대한 緩和規則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프랑스의 Stoufflet는 “서류는 거의 同一하고 正當하여야 함에는 결코 여지가 없다.”라는 영국의 원칙을 견지하고, 비록 송장상의 명세는 정확하되 船貨證券상의 명세가 略記된 제시를 결코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¹⁶⁾ 또 독일의 Zahn은 民法 제 665 조에 의거하여, 연방 최고법원의 한 判決을 비난하면서 “선적서류 嚴格性緩和의 발상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 외국무역의 지급도구로서 신용장은 그 형식적인 嚴格性を 생명으로 한다. … 선적서류 嚴格性的 緩和는 모든 신용장 당사자에 대한 고맙지 않은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¹⁷⁾ 반면에 우리 나라의 판례는 미국관습과 信用狀 統一規則의 입장을 좇아 書類一致性의 緩和規則을 수용하고 있다.¹⁸⁾

(3) 詐欺書類에 대한 免責問題

서류심사에 있어서 相當한 注意를 다한 은행은 그 서류가 詐欺로 밝혀지더라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컨대 영국의 *Basse and Selve v. Bank of Australasia* 사건¹⁹⁾에서 원고 개설의뢰인은 독일은행에게 Sydney의 코발트 수출상 앞으로 확인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독일은행은 피고 확인은행을 통하여 品質證明書 등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확인은행은

14) *Decatur Bank v. St. Louis Bank* 88 U.S. 294 (1874).

15) Kozolchik, *op. cit.*, pp. 273~275.

16) J. Stoufflet, *Le Crédit Documentaire*, Paris, 1957, p. 219.

17) German BGH, W.M. (1960) SS. 38~39.

18) 大判 1985. 5. 28, 84다카697; 大判 1988. 10. 11, 87다카190.

19) (1904) 90 L.T. 618 (Davis, *op. cit.*, p. 147).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一致하는 品質證明書를 수리하였으나, 그 후 수익자가 전혀 무가치한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개설의뢰인은 확인은행이 船積詐欺를 범한 수익자에게 不當하게 支給하였다는 이유로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Bigham 판사는 “피고[확인은행]의 의무는 서류의 眞正性을 확인하는데 있지도 않으며, 物品이 실제로 본선에 積載되었는지를 선박회사에게 확인하는데 있지도 않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免責原則은 이미 1862년 *Woods v. Thiedemann* 사건²⁰에서 확립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船貨證券은 외관상으로 正常的이었으나 실제로는 僞造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원고은행은 선화증권의 眞正性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개설의뢰인이 원고은행에 보상할 것을 명하였다. 그 후 *Hamzeh Malas v. British Imex Industries Ltd.* 사건²¹에서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제 1 차 선적분이 買賣契約과 不一致하다는 이유로 제 2 차 선적분에 대한 수익자의 환어음 발행의 禁止命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Jenkins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확인신용장의 개설은 은행과 물품의 매도인 사이에서 은행에게 支給의 絶對的인義務를 부과시키는 계약을 성립케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어 *Elian & Another v. Matsas & Others* 사건²²에서 Denning 판사는 銀行保證狀에 대하여도 “법원은 그 정당한 이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禁止命令으로써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미국의 *Benecke v. Haebler* 사건²³에서 수입상은 大豆(bears)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은행에게 信用狀의 개설을 의뢰하였으며, 또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書類가 문면상으로 正常的이어서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물품의 品質不良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데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뉴욕 법원은 “원고[은행]는 物品을 검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설의뢰인으로부터 補償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Brown v. C. Rosenstein Co.* 사건²⁴에서도 원고은행은 피고 수입상의 지시에 따라 불가리아의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후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一致하는 船貨證券을 수리하였다. 그러나 수입상은 船貨證券이 僞造되었다는 이

20) (1862) 1 H. & C. 478 (*ibid.*, p. 146).

21) (1957) 2 Lloyd's Rep. 549.

22) (1966) 2 Lloyd's Rep. 495.

23) 58 N.Y.S. 16 (1899) ; Ellinger, *op. cit.*, p. 163.

24) 200 N.Y.S. 491 (1923).

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뉴욕 최고법원은 개설은행의 소송이 이유있다고 보아 “원고[은행]는 서류의 正確性이나 眞正性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 물품이 船積되었는가의 여부는 원고의 위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統一商法典上에도 명문화되어 있다.²⁵⁾ 특히 Kozolchyk는 “은행의 義務에는 서류의 형식 및 외관상의 정규성을 엄격히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할 積極的인 義務, 그 형식 및 외관상의 정규성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 지급거절하여야 할 消極的인 義務, 그리고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로 심사하여야 할 裁量的인 義務만 있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書類의 瑕疵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不注意로 지급하였다면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가 없는 한, 개설의뢰인의 지급거절에 대하여 抗辯할 수 없다.²⁶⁾

결국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은 서류에 대한 嚴格한 審査義務를 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一致하는가를 대조하는 이른바 “形式的인 審査義務”만을 의미할 뿐이며, 그 밖에 서류의 내용이나 효력 등에 관한 “實質的인 審査義務”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출상이 이를 악용하여 계약과 다른 不良品을 선적하거나 또는 전혀 船積하지도 아니하고 선화증권을 僞造하여 신용장조건에 一致한 서류를 갖추어 代金支給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러한 危險은 궁극적으로 수입상이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銀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자를 선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로지 契約履行의 보증이 아닌 支給保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2. 瑕疵擔保責任의 缺如

일반적으로 “瑕疵擔保責任”(Haftung für Sachmängel)이란 계약당사자가 목적물의 契約適合性 또는 權利適合性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영미법상의 擔保責任(warranty)에 관한 법리와 비교된다. 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의 결여는 상대방의 권리구제로 이어진다. 즉, 신용장거래에서 瑕疵擔保責任의 缺如는 서류의 適法性的 결여, 서류의 文面要件 및 提示要件의 결여 등에 의하여 성립되며, 이것은 곧 서류의 受理拒絶權으로 이어진다.

25) UCC Sec. 5-109(2) and 5-114(1).

26) Kozolchyk, *op. cit.*, p. 258.

(1) 書類의 適法性的의 缺如

모든 서류는 반드시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有效性(validity)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타 어떠한 違法性(illegality)도 내포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CIF 계약에서 상대국과 戰爭이 발발하여 違法化된 船貨證券은 서류로서의 적법성을 상실하게 되듯이, 신용장거래에서도 이러한 선화증권은 瑕疵書類로 분류된다는 것이다.²⁷⁾ 또 모든 서류는 문면상으로 그 동종의 서류가 통상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正規性(regularity)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의 *Skandinaviska Kreditaktie-bolaget v. Barclays Bank* 사건²⁸⁾에서 Greer 판사는 貨主의 기재없이 指示式으로만 발급된 船貨證券은 不正規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신용장에 따라 은행에 제시된 이러한 종류의 서류[선화증권]는 그 서류에 관한 한 여하한 문제도 야기되지 아니하는 서류이어야 한다고 보아진다.”라고 역설하였다.

서류의 正規性에 관한 평가는 事實의 問題이다. 만약 서류가 정규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漏落하였거나 또는 정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추가한 경우, 이를 不正規하다고 한다. 예컨대 영국의 *National Bank of South Africa v. Banca Italiana Di Sconto* 사건²⁹⁾에서 Bankes 판사는 “선화증권은 무역거래의 通常的인 過程에서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樣式의 선화증권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 미국의 *Wells Fargo Nevada National Bank of San Francisco v. Corn Exchange National Bank* 사건³⁰⁾에서 商業送狀은 선화증권의 내용과는 달리 물품의 受貨人을 여러 명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연방법원은 이를 不正規한 제시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서류가 특정의 法律이나 去來慣行에 합치하는가를 일일이 精査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은행은 그러한 법률이나 거래관행을 모두 알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은행은 특정의 法律이나 去來慣行에 관계없이 각 書類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樣式으로부터 이탈되었는지의 여부만을 審査하면 충분할 것이다.

27) *Karberg (Arnhold) v. Blythe, Green, Jourdain & Co.* (1916) 1 K.B. 495 ; *Midland Bank, Ltd. v. Seymour* (1955) 2 Lloyd's Rep. 147 at p. 152.

28) (1925) 22 Ll. L. Rep. 523 at p. 525.

29) (1922) 10 Ll. L. Rep. 531 at p. 536 ; Davis, *op. cit.*, p. 157.

30) 23 F. 2d 1 (1927).

(2) 書類의 文面要件의 缺如

서류는 문면상으로 物品明細, 重量, 數量, 金額 및 通貨의 표시 등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재사항이 결여된 서류는 受理拒絶이 가능한 瑕疵있는 서류로 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는 신용장과 일치한 物品明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물품명세가 모든 서류상에 完述되어 있어야 하는가이다. 일찍이 미국의 *Bank of Montreal v. Recknagel* 사건³¹⁾에서는 “船貨證券上에 물품명세가 完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으며, 이는 영국에서도 이어져 *London & Foreign Trading Corp. v. British & North European Bank* 사건³²⁾에서 Rowlatt 판사는 “물품명세는 船貨證券과 送狀上에 분산되어 있어서는 아니되며, 그 명세는 선화증권상에 完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은행관습과 판례에서는 物品明細에 관한 한, 선화증권과 상업송장 등을 並讀하여 일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모든 서류상의 物品明細를 상호 조합하여 信用狀과 일치하면, 物品明細에 관한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³³⁾ 다만 이러한 경우 물품명세를 조합한 결과가 完全하고 상호간에 矛盾됨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조합은 신용장에 指定된 書類만으로 가능할 뿐이고 기타 부가적 서류까지 並讀하여서는 아니된다.³⁴⁾ 이와 관련하여 信用狀 統一規則은 상업송장상의 物品明細가 신용장과 일치하면, 기타 모든 서류상의 물품명세가 모순되지 아니한 一般用語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37 조 c 항).

둘째, 서류의 문면상 重量 및 數量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이는 瑕疵있는 서류가 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重量證明書を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한, 운송서류를 발행할 때 重量을 附記하여도 이는 정당한 제시로 본다.³⁵⁾ 또 重量과

31) 109 N.Y. 482 (1888); Herman N. Finkelstei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New York, 1930, p. 247.

32) (1921) 9 Ll. L. Rep. 116; Davis, *op. cit.*, p. 174.

33)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239 N.Y. 234 (1924); *Midland Bank, Ltd. v. Seymour* (1955) 2 Lloyd's Rep. 147 at p. 152.

34) *Crocker First National Bank of San Francisco v. De Sousa* 27 F. 2d 462 (1928);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矛盾되게 나타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문면상 一致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信用狀 統一規則 제 13 조 a 항 3 문); “은행은 신용장에 約定되지 아니한 書類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동조 a 항 4 문).

35) “은행은 신용장에서 重量認證 또는 重量證明이 별도의 書類에 의할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運送書類上에 附記한 것으로 표시된 重量날인이나 重量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同規則 제 38 조).

數量の 單位는 신용장상의 용어 또는 기타 계측가능한 방법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예컨대 *London & Foreign Trading Corporation v. British & North European Bank* 사건³⁶⁾에서 신용장은 남아프리카產 옥수수가루 500 톤을 요구 하고 있었으나, 船貨證券上에는 옥수수가루 “5,895 포대”, 送狀上에는 “포대당 190 파운드 500 톤”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Rowlatt 판사는 “선화증권 상의 重量은 정당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셋째, 서류는 문면상 信用狀金額과 일치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Lamborn v. Lake Shore Banking & Trust Co.* 사건³⁷⁾에서 수익자는 信用狀金額의 전액에 상당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外國換費用을 추가하여 지급 청구하였다. 그 비용은 소액이었으나, 뉴욕 법원에서는 은행이 이를 支給拒絶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환어음이나 支給請求書上의 通貨單位가 신용장과 일치하는 한, 기타 서류상의 通貨單位는 불일치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Pan-American Bank & Trust Co. v.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사건³⁸⁾에서 신용장상에 美달러화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保險證券은 다른 통화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물론 信用狀 統一規則에서 보험증권은 신용장상의 통화단위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 34 조 f 항), 保險證券上의 통화단위는 必須의인 記載事項이 아니기 때문에(영국 海上保險法 제 23 조), 이러한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書類의 提示要件의 缺如

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有效期日 및 場所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그 기일을 경과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제시된 서류는 受理拒絶이 가능한 瑕疵있는 서류로 본다. 또 신용장에서 유효기일에 추가하여 船積期日과 서류의 提示期日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경과하여 선적 또는 제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不可抗力 이외의 이유로 은행의 休業日에 도래하여 延長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아니한다.³⁹⁾ 문제는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장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이다.

첫째, 신용장에서 유효기일이 漏落된 경우 그 신용장은 개설일로부터 相當

36) (1921) 9 Ll. L. Rep. 116.

37) 188 N.Y.S. 162 (1921).

38) 6 F. 2d 762 (1925).

39) 信用狀 統一規則 제 44 조 b 항.

한 期間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相當한 期間”이란 선적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⁴⁰⁾ 또 신용장상에 유효기일이 명기되었다라도 그것이支給, 引受 또는 買入 중 어느 것을 기한으로 하는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引受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예컨대 *Midland Bank, Ltd. v. Seymour* 사건⁴¹⁾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서상에 “Available in Hong Kong until 31 December 1952.”라고 명기되었으나, 은행은 동년 12월 31일 홍콩에서 買入된 환어음을 그 기한이 만료된 후 런던에서 引受하였다. 이에 Devlin 판사는 신용장거래에서 買入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설의뢰서상의 “Available”이란 引受를 위한 最終期日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신용장에서 유효기일의 恩惠日(days of grace)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경우이다. 미국의 *Second National Bank of Toledo v. M. Samuel & Sons, Inc.* 사건⁴²⁾에서는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만기 1일 전에 서류를 발송하고 이는 만기된 翌日에 도착하였다. 물론 서류가 정상적으로 우송되었다면 그 滿期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Rogers 판사는 그러한 到着遲延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遲延은 매입은행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고, 또 매입은행은 어음所持人으로서 3일의 恩惠日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⁴³⁾ 반면 영국에서는 어음법상의 恩惠日是 요구불 환어음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결코 신용장에 따른 모든 환어음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신용장에 특정된 만기일은 최종적이며 恩惠日의 어떠한 여지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⁴⁴⁾

셋째, 신용장에서 서류의 提示場所가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일찍이 *Michigan State Bank v. The Estate of Henry Leavenworth* 사건⁴⁵⁾에서 Michigan의 수입상은 3만 달러 상당액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에 원고은행은 Michigan이 아닌 New York을 支給地로 한 수익자의 환어음을 할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신용장상에 장소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인이 Michigan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Michigan

40) *Lamborn v. National Park Bank of New York* 204 N.Y.S. 557 at p. 559 (1924).

41) (1955) 2 Lloyd's Rep. 147.

42) 12 F. 2d 963 (1926).

43) Uniform Negotiable Instruments Law (U.N.I.L.) 1896, Sec. 85.

44) BEA Sec. 14(1); *Stoufflet, op. cit.*, p. 313.

45) 28 Vt. (2 Williams) 209 (1855); *Ellinger, op. cit.*, p. 306.

을 支給地로 한 환어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서류의 提示場所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場所는 환어음 지급인의 居住地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제시장소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Midland Bank, Ltd. v. Seymour* 사건⁴⁶⁾에서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홍콩에서 유효한”(available in Hong Kong)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으나, Devlin 판사는 “신용장의 使用場所로 홍콩을 지정한 것은 결정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일치성은 충족되었다.”라고 판시하였다.

넷째, 신용장에서 지정된 서류는 원본 全種類의 全通(full set)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The Dawson* 사건⁴⁷⁾에서도 신용장 개설의뢰서에는 數人の 전문가(experts)가 서명한 檢査證明書を 요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1人的 전문가(expert)만 서명한 證明書는 불일치한 제시라고 판시하였으며, *Williams Ice Cream Co., Inc. v. Chase National Bank* 사건⁴⁸⁾에서도 신용장은 기명식 선화증권을 요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백지서명된 지시식 선화증권의 제시는 불일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皮相的인 書類는 반드시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Bank of New York & Trust Co. v. Atterbury Bros.* 사건⁴⁹⁾에서 신용장은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에 따른 모든 書類가 提示되었음을 확인한 별도의 證明書”를 첨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뉴욕 법원은 “그러한 證明書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기타 모든 서류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本質的인 書類와 皮相的인 書類가 무엇인지를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그러한 증명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극히 필요한 서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희박하다고 본다.

46) (1955) 2 Lloyd's Rep. 147.

47)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1927) 27 Ll. L. Rep. 49.

48) 199 N.Y.S. 314 (1923).

49) 234 N.Y.S. 442 (1929).

Ⅲ. 瑕疵書類의 受理拒絶權의 喪失事由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심사자는 受理拒絶節次를 위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不一致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제 14조 e항).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갖지 못하거나 喪失하는 事由에 관하여는 信用狀 統一規則 제 14조의 명시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有權解釋을 담은 의견서(Opinions)와 사례연구서(Case Studies) 등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1. 書類만의 審査義務의 違反

신용장의 開設銀行은 타은행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한 경우에는, 그 指定銀行에게 보상하고 書類를 수리하여야 한다. 信用狀 統一規則 제 14조 b항에는 “서류를 수령한 당시에 開設銀行 및/또는 確認銀行(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指定銀行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문면상 一致하게 표시되었는지를 書類만에 基礎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書類의 受理를 拒絶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심사자는 서류가 信用狀條件에 일치하는지를 “書類만에 基礎하여”(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심사하고, 만약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때에는 서류를 受理拒絶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서류의 심사자는 서류가 信用狀條件에 일치하는지를 書類 이외의 事由에 기초할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受理拒絶權을 갖지 못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⁵⁰⁾

(1) 銀行은 事實보다 書類만에 基礎하여 審査함.

어느 항공화물을 위한 신용장에 따라 支給銀行(paying bank)은 一致된 書類와 상환으로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정보에 따라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없는 運送周旋人(freight forwarder) 발행의 항공화물

50) 梁暎煥·徐正斗, 信用狀事例研究, 三英社, 1995, pp. 199~213.

운송장을 제시하였으며 물품도 스페인의 稅關當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용장을 취소하려고 하였다. 이에 지급은행은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운송주선인은 IATA(국제항공운송인협회)가 인정한 Iberia 항공사의 代理人으로서 서명하였으므로 서류상 아무런 瑕疵가 없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 분쟁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이 기술적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開設銀行의 항변은 신용장거래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信用狀 統一規則 제 14 조 b 항에 의거하여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오직 書類만에 基礎하여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은행은 書類로써 거래하여야 하며 기타의 어떠한 事實에 따라 거래할 수는 없다.⁵¹⁾

(2) 銀行은 信用狀에 規定된 書類만을 審査함.

어느 은행이 1989년 5월 13일에 C&F 조건의 화환신용장을 개설한 후 5월 30일에는 동년 5월 8일자의 船貨證券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동년 5월 12일부터 물품에 대한 滯船料(demurrage)가 발생하였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이러한 손해가 保險證券(insurance policy) 상의 담보개시일을 벗어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은행은 신용장에 規定되지 아니한 書類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제 13 조 a 항). 따라서 위의 신용장상에는 운송계약만을 전제한 C&F 선적이 명시되어 있을 뿐 保險書類는 요구되지 않았다. 만약 은행이 그러한 書類를 수령하였다면, 은행은 이를 제시인에게 返送하거나 또는 이를 아무런 책임 없이 그대로 送付하여야 한다. 은행은 신용장에 規定되지 아니한 書類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不一致하거나 기타의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와 모순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체의 서류를 受理拒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계는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⁵²⁾

(3) 開設銀行이 買入後 어음滿期를 延長한 경우

어느 신용장의 매입은행은 “선화증권의 발행일 후 90일 출급”의 기한부 환

51) Jan Dekker ed.,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Case No. 46.

52) Jan Dekker ed.,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89, 1991. 12, Case No. 204.

어음을 정히 매입하였으며 개설의뢰인도 이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개설은행은 開設依頼人の指示에 따라 환어음의 만기 직전에 그 滿期日을 “선적일 후 180일 출급”으로 延長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를 얻어 이를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다시 滿期日이 도래하여도 개설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개설은행도 신용장에 의거한 환어음의 滿期日이 연장 됨으로써 貨換信用狀에 의한 保障은 상실되고 추심거래에 의한 보장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開設銀行은 타은행에게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하면 지정은행에게 補償하고 書類를 受理하여야 한다(제 14조 a 항). 특히 위 분쟁의 경우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환어음의 滿期日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지급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⁵³⁾

(4) 留保條件附의 瑕疵書類에 대한 補償義務 없음.

어느 취소불능 신용장의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서류에 대한 일부 瑕疵事項을 발견하고 이를 留保條件附로 매입한 후 확인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에게 그 瑕疵事項을 모두 통고하고 선적서류도 DHL로 송부하였다. 이에 개설은행은 서류의 瑕疵에도 관계없이 매입은행의 支給請求에 응하여야 하는지를 ICC에 질의해 왔다. 취소불능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의 確約은 서류가 문면상으로 信用狀條件에 一致하게 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제 2조, 제 9조 a 항). 만약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따른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또 信用狀 統一規則 제 14조 b 항에 따르면,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書類만에 基礎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만약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 거절할 수 있다.⁵⁴⁾

2. 受理拒絶 通告期間의 經過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拒絶하기로 決定한 경우에는,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第 7 銀行營業日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체없

53)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1*, Case No. 44.

54) *ibid.*, Case No. 47.

이, 전신수단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취지를 通告하여야 한다. 그러한 拒絶通告는 서류의 送付銀行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受益者에게 행하여야 한다(제 14 조 d 항 i 호). 즉, 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후 受理拒絶을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第 7 銀行營業日內에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송부은행이나 수익자에게 拒絶通告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受理拒絶의 通告期間과 方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상실한다(동조 e 항).

(1) 書類審査를 위한 “相當한 期間”에 대한 解釋

어느 신용장의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書類를 매입시키고 매입은행도 정상적으로 開設銀行에게 서류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령한 후 2 주일이 경과해서야 매입은행에게 이를 受理拒絶한다는 通告를 해왔다. 수익자는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이 信用狀 統一規則에서 규정한 “相當한 期間” 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拒絶通告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ICC에 질의하였다. 信用狀 統一規則 제 13 조 b 항에는 은행은 서류를 審査하여 拒絶通告를 하기까지 그 수령일로부터 제 7 은행영업일의 범위내에서 相當한 期間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相當한 期間”(reasonable time)이란 서류의 제시, 종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7일의 기한내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은행이 수백통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면, 7일 동안의 전시간에 걸쳐 相當한 期間을 향유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급을 수령할 당사자만 확인하는 단순한 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의 審査期間은 1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분쟁의 경우 개설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후 2주일을 경과하여 拒絶通告를 하였다면, 이것은 同規則 제 14 조 d 항 i 호에 따른 拒絶通告期間을 위반한 것이다.⁵⁵⁾

(2) 相當한 期間內의 拒絶通告節次를 違反한 경우

어느 신용장의 매입은행은 1986년 5월 22일에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였다. 대체로 서류를 발송한 7~8일 후에는 개설은행의 회신이 들어온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독촉장을 받은 후 동년 6월 4일에 서류의 瑕疵事項을 기재한 텔렉스를 보내왔다. 매입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개설은행이 信用狀 統一規則에 따른 相當한 期間內에 전신으로 이

55) *ibid.*, Case No. 48.

를 통고할 의무를 違反하였는지를 ICC에 질의해 온 예가 있다.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第7銀行營業日의 마감 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電信手段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迅速한 手段에 의하여 그러한 취지를 通告하여야 한다(제 14 조 d 항 i 호). 따라서 매입은행이 1986년 5월 22일 서류를 발송한 후 13일이 경과한 6월 4일에 개설은행의 瑕疵事項을 통고받았다는 사실로 볼 때, 개설은행은 지체없이 거절통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자서류에 대한 受理拒絶權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⁵⁶⁾

(3) 電信이 아닌 航空郵便의 瑕疵通告는 不可함.

어느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서류의 瑕疵事項을 발견하고 제시은행에게 우선 텔렉스로 이러한 사실을 송신하고 동시에 航空郵便으로 瑕疵通告書(letter of discrepancies)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信用狀 統一規則 제 14 조의 절차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개설은행은 더 이상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상실하는지를 ICC에 질의해 온 예가 있다. 은행은 서류를 거절할 경우 지체없이 電信手段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迅速한 手段으로 그러한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동조 d 항 i 호). 즉, 은행의 거절통고는 무엇보다도 電信手段(telecommunication)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 기타 迅速한 手段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이미 電信手段인 텔렉스를 이용하여 거절통고를 하였다면, 그 후의 航空郵便에 의한 거절통고는 필요가 없다. 개설은행은 최초의 텔렉스로 거절통고를 할 때 서류의 瑕疵事項을 모두 명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동조 e 항에 의거하여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상실하게 된다.⁵⁷⁾

3. 瑕疵書類 處理節次の 違反

신용장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不一致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開設依頼人과 하자에 관한 權利拋棄의 여부를 交渉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섭은 信用狀 統一規則 제 13 조 b 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이루어져

56) *ibid.*, Case No. 49.

57)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2*, Case No. 210.

야 한다(제 14 조 c 항). 그러나 개설은행은 서류의 불일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開設依頼人と 협의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개설의뢰인의 權利拋棄를 교섭함에 있어서 受益者側과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개설은행은 하자서류에 대하여 受益者와 교섭하여 지정된 심사기간내에 瑕疵補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開設銀行의 교섭은 반드시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第 7 銀行營業日內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은행은 서류를 拒絶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리거절의 이유가 되는 모든 瑕疵事項(all discrepancies)을 기재하여 거절통고를 하여야 하며, 또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하에 保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제시인에게 返送하고 있는지도 언급하여야 한다(동조 d 항 ii 호). 따라서 은행은 서류를 거절한 경우에는 瑕疵事項을 1 회에 한하여 모두 명기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瑕疵事項의 후속통고는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거절은행은 위와 같은 處理節次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不一致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동조 e 항). 즉, 거절은행이 그 수령일로부터 7 일내에 瑕疵事項을 모두 1 회에 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시인에 대하여 더 이상 서류에 대한 受理拒絶權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1) 開設依頼인에 대한 瑕疵書類의 承認交渉權

어느 신용장의 지정은행은 서류 중에 상업송장상의 청구금액이 초과되어 개설은행에게 이러한 瑕疵事項을 고지하고 권리포기의 承認(approval)을 신청하였으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承認을 받는 대로 즉시 통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1 개월이 지난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개설의뢰인이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개설은행은 서류심사의 期限內에서는 瑕疵書類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그 瑕疵에 관한 權利拋棄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제 14 조 c 항). 개설은행은 서류가 불일치한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설의뢰인과 協議할 필요는 없다.⁵⁸⁾

그러나 이로 인하여 信用狀 統一規則 제 13 조 b 항에서 언급된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즉, 개설은행은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 7 은행영업일내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에게 瑕疵書類에 대한 權利拋棄의 여부를 교섭할

58) *ibid.*, Case No. 206.

수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을 경과한 후에도 서류를 송부은행의 처분권하에 保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비록 瑕疵書類를 수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송부은행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流出하여야 한다.⁵⁹⁾

(2) 瑕疵書類를 拒絕없이 流出한 開設銀行의 責任

어느 신용장의 매입은행은 3월 9일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송부하면서 瑕疵事實을 밝히고 書類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전신으로 그 理由를 붙여 즉시 통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受理拒絕을 유보하고 하자사항에 대한 補償狀(letter of indemnity)까지 발행하여 개설의뢰인의 物品受領을 보장해 주었으나, 개설의뢰인이 파산되자 4월 1일에야 매입은행 앞으로 수리 거절을 통고해 왔다. 개설은행은 서류를 거절할 경우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第7銀行營業日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그러한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제14조 d항 i호). 개설은행이 특정의 瑕疵事項을 알면서도 개설의뢰인의 物品受領까지 보장해 주고 2주일 이상 거절통고를 유보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인 사정에서의 相當한 期間을 훨씬 경과한 것이므로 하자 서류에 대한 受理拒絕權이 상실된다.⁶⁰⁾ 특히 개설은행은 대금결제를 받기 전에 미리 물품을 流出하도록 개설의뢰인에게 허가한 후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서류의 瑕疵事項을 이유로 수리거절할 수 없다.⁶¹⁾ 또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의 寫本으로 물품을 輸入通關하여 橫領한 후 원본서류의 受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조건에 一致하게 제시된 原本書類를 수리거절할 수는 없다.⁶²⁾

그러나 신용장상에 화물을 開設依賴人 앞으로 直送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물품이 이미 개설의뢰인에게 배달되었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령한 후 서류의 다른 瑕疵事項을 이유로 受理拒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물품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상의 瑕疵事項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그 危險을 감수하여야 한다.⁶³⁾

59)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1*, Case No. 54.

60)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2*, Case No. 212.

61) *ibid.*, Case No. 214.

62) *ibid.*, Case No. 216.

(3) 瑕疵補完의 指示는 瑕疵書類의 受理가 아님.

어느 신용장상에는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수익자는 환어음이 아닌 代金額收證(receipt)을 제시하였다. 개설은행은 이것이 瑕疵있다고 보아 송부은행에게 환어음으로 대체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송부은행은 개설은행이 서류를 補完提示하도록 지시한 것은 受理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를 ICC에 질의해 온 예가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상에 명시규정은 없으나 ICC 은행위원회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지정된 심사기한내에 瑕疵書類에 대하여 수익자측에게 瑕疵補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의 하자보완이 不充分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언제든지 이를 수리거절할 수 있다.⁶⁴⁾

(4) 受理拒絶時 瑕疵事項의 通告는 1회에 한함.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瑕疵事項(discrepancies)을 모두 1회의 전신문상에 명기하여 통고해야 하는지, 또는 그 후 추가로 발견되는 대로 瑕疵事項을 후속통고할 수 있는지를 ICC에 질의해 온 예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信用狀 統一規則 제 14조 d항 ii호에는 “그러한 通告에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瑕疵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서류를 거절통고할 때 1회에 한하여 모든 瑕疵事項(all discrepancies)을 명기하여야 하며, 기타 추가적인 瑕疵事項의 후속통고는 할 수 없다.⁶⁵⁾

만약 신용장 개설은행이 몇 가지의 瑕疵事項 중의 한 가지만을 명기하여 서류를 거절하고, 매입은행측에서 만기일내에 문제의 瑕疵事項을 보완하여 제시하였다면, 개설은행은 다른 追加的인 瑕疵事項을 기재하여 서류를 다시 거절하였으며, 이에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추가적인 瑕疵事項을 기재하여 서류를 다시 거절할 수는 없다.⁶⁶⁾ 즉, 은행은 서류를 거절통고할 때 모든 瑕疵事項을 1회에 한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의 거절이유를 變更하

63) *ibid.*, Case No. 213.

64)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2*, Case No. 208.

65)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1*, Case No. 52.

66) *ibid.*, Case No. 53.

거나 追加하여 후속통고를 할 수는 없다.⁶⁷⁾

(5) 拒絶銀行이 保有하거나 返送하여야 할 書類

어느 신용장상에는 船貨證券의 원본 3 통을 발행하여 그 중의 1 통은 개설의뢰인에게 직송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개설의뢰인은 수익자로부터 받은 1 통의 船貨證券으로 이미 물품을 수령해 갔다.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나머지의 선화증권을 支給拒絶할 때 개설의뢰인 앞으로 직송된 1 통의 船貨證券도 회수하여야 하는지를 ICC에 질의해 온 예가 있다. 은행은 서류를 수리거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류를 提示人의 처분권하에 保有하거나 또는 提示人에게 返送하여야 하며, 만약 은행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상실하게 된다(제 14 조 e 항). 그러나 선화증권의 원본 중에 1 통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직송되었다면, 이것은 개설은행에 제시된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⁶⁸⁾

이러한 사정은 신용장상에 開設依頼人의 지시인 앞 船貨證券을 요구하고 그 중의 원본 1 통이 개설의뢰인에게 直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개설의뢰인이 자신에게 전달된 1 통의 서류로 대금의 지급없이 물품의 輸入通關을 마쳤다면, 나머지 원본서류로는 물품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⁶⁹⁾

(6) 留保條件附의 買入과 開設銀行이 無關한 理由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어떤 瑕疵事項에 대하여 留保條件이나 補償條件附로(under reserve or against an indemnity) 서류를 매입하고 그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이와 관계없이 信用狀 統一規則 제 14 조 d 항 내지 e 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ICC에 질의해 온 예가 있다.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령하면 상당한 기간내에 그것이 신용장 조건과 一致하는지를 審査할 책임이 있다. 서류상에 어떤 瑕疵事項이 있어 송부은행이 수익자와의 留保條件 또는 瑕疵補償狀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제 14 조 f 항). 왜냐하면 그러한 留保條件이나 瑕疵補償狀은 오직 송부은행과 제시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67)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2*, Case No. 209.

68)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1*, Case No. 55.

69)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2*, Case No. 215.

뿐이며, 기타 신용장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보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다.⁷⁰⁾

이와는 반대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송부할 때 어떠한 瑕疵事項에 대한 注意를 換氣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ICC에 문의해 온 예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一致하는지를 書類만에 基礎하여 심사하고, 만약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一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拒絶할 수 있다(동조 b 항). 따라서 개설은행도 서류를 수령하면 獨自的인 판단으로 그것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審査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서 송부은행은 어떠한 瑕疵事項에 대하여 반드시 개설은행에게 注意를 換氣시켜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⁷¹⁾

IV. 最近 國內法院의 關聯判例 評釋

본 판례⁷²⁾는 대한민국 국방군수본부(원고)가 한국주택은행(피고)을 상대로 信用狀代金預置金 미화 1,524,000 달러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 할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支給請求訴訟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제 22 민사재판부(재판장 : 조건호 판사)가 1996. 7. 26. 원고의 請求를 棄却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판결선고한 예로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의 이유, 판결의 문제점 등은 다음과 같다.

(1) 事件의 概要

원고는 1990. 11. 19. 프랑스의 에피코사(European Financial Co., Ltd.)로부터 105밀리 고풍탄 3,000 발을 미화 1,524,000 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輸入契約을 체결하고, 그 代金決濟를 위하여 1990. 11. 27. 피고은행에 信用狀開設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은행은 1990. 12. 3. 수익자를 위 에피코사, 유효기일을 1991. 11. 10., 선적기일을 1991. 10. 10.로 하는 신용장금액 미화 1,524,000 달러

70)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1*, Case No. 57.

71) *ibid.*, Case No. 56.

72) 서울지방법원 제 22 민사부 1996. 7. 26. 판결선고, 94가합34802(신용장대금예치금).

의 取消不能 信用狀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1991. 12. 26. 피고은행에 이 사건 信用狀代金 상당액인 미화 1,524,000 달러를 예치하였고, 그 후 위 에피코사의 船積이 遲延됨에 따라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1992. 10. 23. 신용장의 有效期日이 1992. 12. 30., 船積期日이 1992. 11. 30.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은행은 1992. 12. 21. 통지은행인 소외 한국의환은행 파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선화증권 등 船積書類를 송부받고, 같은 달 24. 위 외 환은행 파리지점으로 하여금 에피코사에 信用狀代金 미화 1,524,000 달러에서 船積遲延으로 인한 遲滯償金 미화 76,200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2. 12. 30. 위 지체상금을 國庫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선화증권에는 화물이 1992. 11. 28. 피래우스(PIRAEUS)항에서 카피탄 베크(KAPITAN BETKHER)호에 船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화물은 위 선박에 船積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i) 이 사건 신용장상의 특수조건 제 4 항에는 “선적항, 계약번호, 送狀價格, 到着豫定日, 출발예정일, 신용장번호 등이 기재된 수익자의 船積通知가 운송서류 등이 발행되기 30일 이전에 전신 또는 텔렉스의 방법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에게 통보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은행은 위 船積通知를 받은 바 없고 원고가 선화증권의 발행일인 1992. 11. 28. 받은 선적통지에는 送狀價格과 到着豫定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으며, (ii) 위 신용장상의 특수조건 제 2 항에는 “이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을 위하여 이 신용장의 개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증신용장 등의 형식으로 履行保證書가 발행되어 대한민국 서울의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통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신용장은 발효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된 履行保證書는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1992. 11. 17.에야 발급되었으며, (iii) 위 신용장에는 到着港이 “BUSAN PORT, KOREA”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선적서류 중 船貨證券上에는 “CHINHAE, KOREA”, 商業送狀上에는 “BUSAN, CHINHAE, PORT KOREA”, 包裝明細書上에는 “BUSAN PORT (CHINHAE), KOREA”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은행으로부터 1992. 12. 24.경 船積書類를 인수하고도 아무런 異意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에피코사의 船積詐欺가 밝혀지자 서류인수 후 7개월여가 경과한 1993. 8. 11.경 비로소 피고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 중 신용장의 條件과 不一致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信用狀代金預置金の 반환을 請

求한 것이다. 이에 피고은행은 원고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信用狀代금이 지급된 후 8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아무런 異意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信用狀代金預置金の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2) 判決의 理由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은행으로부터 1992. 12. 24.경 船積書類를 인수하고도 아무런 異意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7개월여가 경과한 1993. 8. 11.경 비로소 피고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 중 신용장의 條件과 不一致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信用狀代金預置金の 반환을 請求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신용장대금이 지급된 후 위 船積書類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필요한 相當한 期間內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의 瑕疵를 이유로 信用狀代金預置金の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은행의 항변은 이유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船積書類를 인수하면 즉시 相當한 期間內에 이를 점검·확인하고, 자신의 지시와 相違한 事項을 발견하여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지체없이 이를 개설은행에 通知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相當한 期間內에 검사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은 瑕疵있는 書類를 이의없이 受理한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에 대하여 信用狀代金預置金の 반환 등의 異意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개설의뢰인이 서류의 瑕疵事項에 대하여 相當한 期間內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瑕疵書類에 대한 受理拒絶權을 상실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3) 判決의 問題點

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신용장과 관련된 서류의 기재와 피고은행의 담당직원인 소외 이교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은행으로부터 船積書類를 인수하고 信用狀代금이 지급된 후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異意를 제기함에 필요한 相當한 期間內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피고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의 瑕疵를 이유로 이를 受理拒絶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신용장거래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법리와 합치한다고 본다.

신용장거래에서 은행(개설의뢰인도 마찬가지이다.)이 서류를 拒絶하기로 決定한 경우에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第7銀行營業日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전신수단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通告하여야 한다. 그러한 拒絶通告는 서류의 送付銀行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受益者에게 행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러한 受理拒絶의 通告期間을 경과한 경우에는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상실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은행이 통지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에 信用狀條件과 문면상 一致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信用狀代金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은행은 원고가 예치한 미화 1,524,000 달러를 返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 피고은행은 원고측의 담당관인 소외 양영화(당시 국방군수본부 조달2부 외자처 외자2과 소속 6급 군무원)가 1992년 12월 22일 피고은행의 담당직원인 소외 이교영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상의 瑕疵事項을 고지받고도 信用狀代金을 支給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위 항변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물의 기재와 증인 이교영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認定할 證據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증거물의 기재와 증인 양영화의 證言에 辯論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교영은 船積書類를 송부받은 후 양영화에게 전화로 遲滯償金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告知하였으며 이에 양영화는 지체상금을 반드시 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은행의 항변은 이유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재판부는 피고은행이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不一致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過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은행으로부터 船積書類를 인수한 7개월여가 경과한 후 선적서류 중 信用狀條件과 不一致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예치금의 반환을 請求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船積書類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필요한 相當한 期間內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은행의 抗辯만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棄却한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船積書類를 인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필요한 相當한 期間內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도 분명한 사실이나, 이 사실에 앞서 피고은행은 원고의 支給代理人으로서 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신용장에 규

정된 書類를 심사하고 그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一致하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제 13 조 a 항). 즉, 은행은 信用狀 統一規則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⁷³⁾에 따라 서류를 審査하여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瑕疵事項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受理拒絶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이 서류의 심사에 관한 相當한 注意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서류의 瑕疵事項을 알고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不注意 또는 受理決定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⁷⁴⁾

따라서 논자는 위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은행이 통지은행으로부터 송부 받은 선적서류에 信用狀條件과 문면상 一致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信用狀代金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유있다고 보았으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원고가 피고은행에 信用狀代金으로 예치한 미화 1,524,000 달러 중에 返還받을 수 있는 금원은 원고가 피고은행으로부터 船積書類를 인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異意를 제기함에 필요한 相當한 期間內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不注意의 비율만큼 過失을 相計한 나머지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V. 結 言 - 實務上의 留意點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에 관한 瑕疵擔保責任(Haftung für Sachmängel)의 缺如는 곧 서류의 受理拒絶權으로 이어진다. 즉, 서류가 有效性과 正規性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文面要件과 提示要件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審査하는 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은 자신의 權利救濟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審査하는 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서류가 비록 瑕疵事項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受理拒絶節次를 위반한 경우에는, 더이상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不一致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서류를 심사하는 實務家들은 구체적으로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갖지 못하거나 喪失하는 경우에 관하여 항상 留意하면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

73) 여기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 함은 은행직무상 가장 정직하고 기술적이며 예견가능한 銀行慣習들을 함축하는 것이다(梁暎煥·徐正斗, 前掲書, pp. 182~183).

74) 徐正斗, “貨換信用狀去來의 諸條件의 解釋에 관한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2. 2, p. 39.

다. 즉, 앞서 언급한 信用狀 統一規則의 관련조항과 紛爭事例 및 判例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사자 입장에서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갖지 못하거나 喪失하는 구체적인 事由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의 심사자는 서류가 信用狀條件에 일치하는지를 ‘書類만에 基礎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만약 書類 이외의 事由에 기초할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受理拒絶權을 갖지 못한다. 예컨대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정보에 따라 物品이 稅關當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CFR 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한 후 保險證券上에 瑕疵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환어음의 滿期日을 延長한 후 연장된 만기일에 支給을 거절하거나, 또는 瑕疵事項에 대한 수익자의 補償狀(L/I)이 첨부된 서류를 수리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⁷⁵⁾

둘째, 서류의 심사자는 서류를 심사한 후 受理拒絶을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第7銀行營業日內에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拒絶通告를 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受理拒絶의 通告期間과 方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류의 受理拒絶權을 상실한다. 예컨대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이 서류를 受領한 2주일 또는 7개월 후에 이를 受理拒絶하거나, 또는 텔렉스의 이용이 가능할 때 航空郵便으로 수리거절의 통고를 할 수는 없다.⁷⁶⁾

셋째, 개설은행은 서류의 瑕疵가 있을 경우 그 受領翌日로부터 제 7은행영업일내에 개설의뢰인과 瑕疵에 관한 權利拋棄의 여부를 交渉하거나 또는 수익자와 교섭하여 瑕疵補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서류를 拒絶通告할 때에는 瑕疵事項을 1회에 한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處理節次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不一致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예컨대 개설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후 1개월이 지나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瑕疵承認을 받지 못하였다고 회신하거나, 瑕疵書類를 개설의뢰인에게 流出하여 物品을 수령케 하였거나, 매입은행측이 지적받은 瑕疵事項을 기일내에 보완해 왔을 때 다른 事由를 내세우거나, 또는 매입은행이 瑕疵事項에 대한 注意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다는 事由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⁷⁷⁾

75) Jan Dekker ed., *op. cit. supra note 51*, Case Nos. 44~47; *supra note 52*, Case No. 204.

76) *ibid. supra note 51*, Case Nos. 48~49; *supra note 52*, Case No. 210; 서울민지판 1996. 7. 26, 94가합34802.

77) *ibid. supra note 51*, Case Nos. 52~57; *supra note 52*, Case Nos. 208~216.

參 考 文 獻

- 梁映煥·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4.
———, 信用狀事例研究, 三英社, 1995.
- 林泓根, 荷換信用狀의 法的構造, 三知院, 1991.
- 徐正斗, “貨換信用狀去來의 諸條件의 解釋에 관한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2. 2.
-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 511, 1993. 7.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ICC Publication No. 535, 1995. 6.
- Davis, A.G.,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London, 1965.
- Dekker, Jan,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89, 1991. 12.
- Ellinger, E.P.,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Singapore, 1970.
- Finkelstein, Herman 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New York, 1930.
- Gutteridge, H.C. &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London, 1984.
- Kozolchyk, Bo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New York, 1976.
- Schmitthoff, Clive M., *Schmitthoff's Export Trade*, 9th ed., London, 1990.
- Stoufflet, J., *Le Crédit Documentaire*, Paris, 1957.